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610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사행정 및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관 소관 위임사무란을 삭제하고, 복지건강국 소관 위임사무란 다음에 행정자치국 위임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자치국〉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령	수임처
1. 4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급 나. 휴직 및 복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63조 및 제65조	상수도사업본부장
2.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급 나. 휴직 및 복직 다. 보직·전보 및 직위해제 라. 징계의결 요구 마. 근무성적 평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제30조의5 및 제65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6조	상수도사업본부장
3. 6급 이하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연구사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신규·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복직·직위해제 및 면직) 나. 보직관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9조의2·제30조의4·제38조·제62조·제63조·제65조 및 제65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제28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9조·제11조·제26조·제27조 및 제30조 같은 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상수도사업본부장

위 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령	수임처
다. 호봉획정 및 승급 라.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마. 근무성적 평정(행정직군·기술직군 7급 이하와 관리운영직군만 해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같은 법 제76조	
4. 각 사업소내 6급 이하 지방공무원보직 및 전보권(단, 건설본부 및 낙동강관리본부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법」 제6조	사업소장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농업기술센터소장
6. 5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 원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인재개발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7.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시의회사무처장
8.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신규임용·승진재임용·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나.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다. 호봉획정 및 승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같은 규정 제13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시의회사무처장
9.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면직·근무기간 연장·근무실적평가·교육 훈련·복무·전보·휴직 및 복직 나.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63조 및 제6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8까지 및 제26조의2 같은 법 제6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시의회사무처장
10. 개방형 직위 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계약해지·임용기간연장·휴직 및 복직 나.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제6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시의회사무처장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조정실 소관 인사행정 관련 사무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제4조제3호 및 제12조제3호)

○ 기획조정실 → 행정자치국